

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

소속		직위	성명	
(단위: 천원)				
본인과의 관계	재산의 종류	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	가액 (실거래가격)	비고
▶ 토지(소계)			()	
▶ 건물(소계)			()	
▶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·건설기계·선박 및 항공기(소계)			()	
▶ 현금(소계)				
▶ 예금(보험 포함)(소계)				
▶ 「정치자금법」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(소계)				
▶ 증권(소계)				
▶ 채권(소계)				
▶ 채무(소계)				
▶ 금 및 백금(소계)			()	
▶ 보석류(소계)			()	
▶ 골동품 및 예술품(소계)			()	
▶ 회원권(소계)			()	
▶ 지식재산권				
▶ 합명·합자·유한회사 출자지분(소계)				
▶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				
▶ 가상자산(소계)				
▶ 고지거부 사항				
총계				

위의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등록의무자

(서명 또는 인)

법원행정처장 귀하

기재요령

1. 소속·직위 및 본인과의 관계

- 등록의무자의 친족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고, 본인과의 관계만 기재하십시오.
 - 본인,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.
 -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속·직계비속도 '고지거부 사항'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고지거부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.

2. 재산의 종류

- 재산의 종류별로 본인,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.
- 토 지
 - 임야·전·답·대지·잡종지 등을 기재하십시오.
- 건 물
 - 아파트·연립주택·단독주택·상가·빌딩·오피스텔·사무실 등을 기재하십시오.
 - 아파트, 오피스텔의 경우는 건물면적만 기재하고 대지면적은 기재하지 마십시오.
 - ※ 미입주 분양아파트인 경우에도 기재하십시오.
-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·건설기계·선박 및 항공기
 - 광업권·어업권·자동차·항공기·선박·건설기계 등을 기재하십시오.
- 동 산
 - 현금·수표·예금(파생상품증거금 포함)·「정치자금법」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또는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·채권·채무·금·백금·보석류
 - 증권: 주식·국채·공채·회사채·백지신탁·주식매수선택권 등을 기재하십시오.
 - 골동품·예술품: 도자기·서양화·동양화·서예·공예·수예·조각·칠기 등을 기재하십시오.
 - 회원권: 골프회원권, 헬스회원권,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기재하십시오.
 - 지식재산권: 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·상표권·저작권 등을 기재하십시오.
 - 합명·합자·유한회사의 출자지분
-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
- 가상자산

3. 소재지·면적 등 권리명세

※ "최초재산등록 신고서"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,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.

- 건물: 주택에 대하여는 단독주택의 경우 지번,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명·동·호수 생략
예) A시 B동 C아파트 1동 100호 → A시 B동 아파트/A시 B동 123번지 → A시 B동
- 예금: 개인별·예탁기관별로 예금의 합계액을 기재하십시오.
- 증권: 개인별·종목별로 수량을 기재하고 합계액을 '가액'란에 기재하십시오.
- 합명·합자·유한회사의 출자지분
 - 회사명·출자금액·지분비율 및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기재하십시오.
-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
 - 법인명·출연재산·보유직위를 기재하십시오.
- 가상자산

4. 가액

- () 안에는 실거래가격(실매입액)을 기재하십시오.
- 증권 중 주식매수선택, 지식재산권,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총계에 반영하지 마십시오.

5. 그 밖의 사항

- 재산의 취득일자·소득원 등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'비고'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기재하지 마십시오(친족 성명, 연락처, 계좌번호 등).
-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은 관보에 게재됩니다.
- 최초재산등록 신고서와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은 각각 별도로 작성·제출해야 합니다.
-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의 재산내용은 최초재산등록 신고서의 재산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.